# 위탁자산 평가세칙

제 정 2006. 9. 15 개 정(1) 2007. 6. 12 개 정(2) 2014. 1. 13 개 정(3) 2014. 7. 25 개 정(4) 2016. 6. 21 개 정(5) 2017. 4. 14 개 정(6) 2019. 2. 11 개 정(7) 2020. 8. 14 개 정(8) 2021. 2. 2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①위탁자산은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다만, 이 세칙 및 「위탁자산 평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동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는 위탁자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세칙 및 지침과 달리 정한 평가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④위원회가 위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가격평가정보제공업체라 함은 공사위탁자산에서 보유 중인 외화채권, 파생상품 및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 제2장 위탁자산평가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운용지원담당부문장, 운용지원담당본부장, 안전과 관련 있는 투자운용담당부서장, 운용지원담당부서장,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성과분석담당부서장, 준법지원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지원담당부문장이 된다. 단, 위원장 부재 시에는 운용지원담당본부장이 대행한다.
  - ③간사는 운용지원담당부서장이 된다.
  -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에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③간사는 제7조의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6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자산별 가격평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2. 가격평가정보제공업체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정가치 산정이 곤란한 위탁자산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4.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평가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 5. 제10조2항에 의해 공정가치를 정해야 하는 사항
  - 6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원가평가 적용에 관한 사항
- 제8조(의결방법) 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보고) 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각 위원의 서명 후 위원장 및 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위탁자산 평가와 관련 심의·의결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수탁은행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위탁자산의 평가

**제10조(적용환율)**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 기준일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을 사용한다.

#### 제4장 자산별 평가방법

제11조(상장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 준일에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12조(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지침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3조(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 가로 평가한다.

제14조(채무중권) 채무증권은 평가 기준일의 증권시장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가격평가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제15조(부동산) 부동산은 지침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6조(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은 가격평가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단, 가격평가정보제공업체가 가격 정보를 제공할수 없는 장외파생상품은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에 따라 평가한다.

제17조(집합투자증권) ①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로 평가한다.

②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출자금 등의 금융상품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자산위탁유용사가 제공한 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 제18조(단기금융증권) 기업어음(CP) 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단기금융증권은 가격평가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또는 적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 인한 금액을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한다. 단, 만기가 짧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9조(기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 1.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 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
  - 2.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 제5장 공시 처리

- 제20조(유·무상주식) 해당주식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단, 무상으로 수령하는 주식이 분사 등으로 인해 비상장된 신설법인의 주식은 제1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준용하다.
- 제21조(신주인수권) ①신주인수권이 매매 가능하고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 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②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은행이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22조(주식배당) 해당주식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23조(공모신주) 상장 시점까지 매입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24조(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 ①상장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한다.
  - ②비상장주식의 경우 제1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준용한다.

##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6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